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21
----------	-------

발의연월일 : 2026. 4. 9.

발 의 자 : 한창민 · 정춘생 · 윤종오
이주희 · 용혜인 · 손 솔
전종덕 · 정혜경 · 신장식
김종민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두터이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8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를 요청받거나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③ (생 략)</p>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개인정보 보호법</u>」에 따른 <u>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u></p>